

대명사의 인지

공 영 일

0. 대명사는 언어이론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언어자료 중의 하나일 뿐 아니라 새로운 언어이론이 나올 때 마다 혹은 기존이론에 대한 수정이 가해질 때 마다 거의 예외없이 언제나 그 이론이 적용되고 시험되어지는 분야 중의 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다른 이론 모형들을 사용하여 대명사문제를 다루어 왔기 때문에 지난날의 대명사이론들은 이론체질적인 면에 있어서나 기술(記述)의 내용면에 있어 서로 판이하게 다른 경우가 흔히 있다. 그러나 통사적 접근법을 취하는 기능적(機能的) 접근법을 취하는 대명사이론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상호지칭관계(相互指稱關係)가 성립되는 두 명사 간의 상대적인 prominence를 정하고 이 prominence 개념이 적용되는 domain을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종래의 대명사이론들은 prominence의 정도가 높은 명사가 선행사가 되고 prominence의 정도가 낮은 명사가 대명사가 되는 선행사 대명사관계의 특성을 규칙의 형태로 포착하여 여러 유형의 대명사자료를 일반성있게 기술하려고 하였다.

지금까지의 대명사연구가 prominence와 coreference domain의 적절한 설정을 통하여 대명사와 선행사 사이의 지칭관계를 설명하려고 한 것은 대명사문제의 연구를 위한 접근법으로서 올바른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종래의 대명사이론이 일부 특정구문형태의 문장에서 볼 수 있는 지칭관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명사자료를 일반성있게 설명하는데 있어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아 확실한 반대논리가 없이는 prominence와 coreference domain을 중심으로 하는 재래의 접근법이 옳지 않다고 주장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글은 종래의 대명사이론들이 기본적인 접근법에 있어 올바른데도 불구하고 일부 특정 대명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없었던 것은 대명사-선행사 간의 지칭관계에는 정적인 개념으로 정의된 통사적 혹은 기능적 prominence와 coreference domain 이 포착할 수 없는 동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며 대명사이론이 이러한 동적인 측면을 포용하려면 문장인지의 기본단위인 인지단위(perceptual unit)를 coreference domain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려고 한다. 인지적으로 정의된 이론단위들이 대명사이론의 일부로 사용되게 되면 지금까지의 이론들이 설명을 하지 못했던 대명사자료들이 극히 자연스럽게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앞으로 이 글에서 보게 될 것이다.

1.1. 1960년대 초 대명사가 현대문법의 테두리 속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이래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대명사규칙은 Langacker (1966)가 제안한 (1)과 같은 규칙일 것이다.

(1) NP-a may pronominalize NP-p unless NP-p precedes NP-a and NP-p commands NP-a.

위의 규칙은 “precede and command”라는 새로운 prominence 개념을 대명사이론에 도입했으며 아래 (2)에서 보는 바와 같은 꽤 다양한 유형의 대명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었다.

(2) (a) The fact that *he* was a moron didn't bother *John*.

- (b) *It didn't bother *him* that *John* was a moron.
- (c) The man who shot *him* didn't know *John*.
- (d) **He* was unknown to the man who shot *John*.
- (e) The man who shot *him* claimed that *John* had attacked first.
- (f) The man who shot *him* didn't know the woman *John* loved.
- (g) Because he was famous, *John* always wore dark glasses.
- (h) **He* always wore dark glasses because *John* was famous.
- (i) After meeting *his* wife, *Mary* wouldn't see *John* any more.
- (j) The evidence that *he* was innocent cleared *John*.
- (k) **He* was cleared by the evidence that *John* was innocent.

위의 예문 중 (b), (d), (h) 등의 문장들은 precede-and-command하는 명사-즉, prominence의 정도가 높은 명사-가 대명사이기 때문에 대명사-선행사관계가 성립될 수 없어 비문이 되나 기타의 문장에서는 대명사가 선행사를 'precede'하지만 'command'하지 않기 때문에 대명사-선행사관계가 성립되어 정문이 된다는 것이다.

(2)에서 본 예문과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이 모두 소위 말하는 backward pronominalization의 경우에 속하는 것이란 점이다. 실상 규칙 (1)이 명시적인 표현은 하지 않고 있으나 분명히 전제하고 있는 가설은 대명사화(pronominalization)에 있어서의 제약은 backward의 경우에만 가해지고 forward pronominalization의 경우에는 아무런 제약도 가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1960년대의 문법용어를 빌어 표현하면, 문장 내의 모든 선행사-대명사관계는 대명사화 변형규칙 혹은 대명사 해석규칙에 의해 연결되지는 것인데 forward pronominalization의 경우에는 이들 규칙이 아무런 제한없이 적용되나 backward의 경우에는 규칙 (1)에서 규정한 구조적 상관관계에 의해 연결되는 두 명사 간에는 대명사화규칙이 적용될 수 없어 대명사-선행사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Ross (1967)는 그러한 가설을 아래 (3)과 같이 명시적으로 규칙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 (3) (a) Forward pronominalization is subject to no condition (obligatory).
- (b) Backward pronominalization is only possible if the NP-p is dominated by a subordinate clause which does not dominate the NP-a (optional).

그러나 그러한 가설(앞으로 Ross-Langacker가설이라 부름) 이후 많은 반증자료에 의해 옳지 못하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것으로는 아래(4~5)와 같은 것들이다.

- (4) (a) *Near *John*, he saw a snake.
- (b) Near *him*, *John* saw a snake.
- (5) (a) *In *Mary's* apartment, she was assaulted by a thief.
- (b) In *her* apartment, *Mary* was assaulted by a thief.

Ross-Langacker가설에 따를 것 같으면 위의 (a)문장들은 선행사가 대명사를 선행하는 forward pronominalization의 경우이기 때문에 정문이어야 하는데 비문이 되고 (b)문장들은 precede-and-command하는 명사가 대명사에서 규칙 (1)에 따라 대명사-선행사관계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비문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정문이 되어 Ross-Langacker의 가설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precede-and-command 개념이 대명사의 지칭관계를 기술하는 prominence 개념으로서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더욱이 위 예문의 (a)문장들에 있어서 선행사가 대명사를 선행할 뿐 아니라 command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뒤따르는 대명사의 지칭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prominence 개념으로서의 precede-and-command는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1.2. Ross-Langacker의 가설이 제안된 형태 그대로 지탱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진 후 precede-and-command 개념을 수정하거나 의미론이나 화용론적 개념을 도입하여 그 가설을 살려보려는 노력이 1970대 초엽까지 꾸준히 계속되었다. 그 중에서도 precede-and-command의 개념을 정면으로 수정하여 문제된 대명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 것이 Wasow (1972)이다. 그는 precede-and-command 대신 depth of embedding이라는 새로운 prominence 개념을 설정하여 아래 (6)과 같이 대명사규칙에 도입하면 Ross-Langacker 가설을 수정하지 않아도 문제된 대명사자료들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6) If an NP serves as the antecedent of a definite pronoun to its left, the pronoun must be more deeply embedded than the NP.

규칙 (6)은 아래 (7)에 예시한 문제자료를 포함한 기타의 backward pronominalization의 경우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 (7) (a) Near *him*, John saw a snake.
 (b) In *her* her apartment, Mary was assaulted by a thief.
 (c) **He* loved John's mother.
 (d) **They* speak well of the Smiths' maid.
 (e) **She* gave Mary's friend a going away present.

Wasow(1972)는 'more deeply embedded than'이라는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If a pronoun is dominated by a cyclic node not dominating the NP, then the pronoun will be considered, by convention, to be more deeply embedded. Similarly, if the pronoun is the part of a prepositional phrase, the NP is not, and the NP commands the pronoun, then the pronoun is more deeply embedded. On the other hand, if the pronoun is the subject or object of a sentence containing the NP, then the pronoun is not more deeply embedded.

이와 같은 more-deeply-embedded-than의 정의에 따라 (7)의 예문 중 (a-b)문장은 대명사 선행사에 비해 더 깊게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즉 덜 prominent하게 때문에—정문이 되나 (c-e)문장은 반대로 선행사가 대명사에 비해 더 깊게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비문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문제된 자료 중 (4a)와 (5a)와 같은 forward pronominalization이 허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전연 설명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크게 의심된다. 이점에 관해 Wasow (1972)는 말하기를 영어의 문법은 (4a)나 (5a)와 같은 문장에서 forward prono-

minalization을 허용하지만 이들 문장이 실제 비문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수행계약 (performance constraint)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8) If a preposed NP serves as the antecedent for a pronoun in the same clause which is too close to it, the sentence is unacceptable.

다시 말하면 (4a,5a)와 같은 문장은 문법외적인 요인인 수행계약에 의해 설명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상 대명사규칙에 의해 제약되어질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주장이 타당성을 지니려면 그가 제안한 수행계약 (8)이 실제자료에 의해 뒷받침 받아야 한다.

Wasow가 수행계약 (8)을 제안하게 된 근거는 Chomsky (personal communication)나 Akmajian and Jackendoff (1970) 등이 이미 지적한 것인데, 아래 (9)와 같은 예문에서 보는 것처럼 선행사와 대명사 간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대명사 *she*가 명사 *Mary*를 지칭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아진다는 데에 있다.

- (9) (a) *In *Mary's* apartment, *she* was attacked by a thief.
(b) In *Mary's* newly furnished apartment on 5th Ave, *she* was attacked by a thief.

그러나 Wasow의 수행계약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많은 반증자료를 발견하게 된다.

- (10) (a) In the letter Dr. Levin got from *Zelda*, *she* spoke about butterflies.
(b) *In *Zelda's* letter, *she* spoke about butterflies.

- (11) (a) *Near *Dan*, *he* saw a snake.
(b) *Near *Dan*, who has been living in the jungle for 20 years, *he* saw a snake.

(10)에서는 (a)문장의 *Zelda*와 *she*의 거리가 매우 가까운 데도 정문인데 반하여 (b)문장의 선행사-대명사 거리는 (a)문장에 비하여 훨씬 먼데도 비문이 된다. (11)의 예문에 있어서는 선행사-대명사 거리가 가까우나 머나에 관계없이 두 문장이 다 비문이 된다. 이러한 사실은 수행계약 (8)가 실제자료에 의하여 뒷받침 받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대명사이론이 (10-11)의 자료를 설명할 수 있는 일반적 원칙을 발전시켜야함을 말해주고 있다. 더욱이 수행계약 (8)이 그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원래 이 제약이 설명하는 것으로 주장되었던 예문 (12)와 같은 대명사화에 있어서의 주어와 목적어의 차이 또한 문제자료로 계속 남게 된다.

- (12) (a) *In *Mary's* apartment, *she* was attacked by a thief.
(b) In *Mary's* apartment, a thief attacked *her*.

위 예문에서 보는 것처럼 대명사가 주어인 (a)의 경우에는 비문이 되나 목적어인 (b)의 경우에는 정문이 된다. Wasow (1972)는 이러한 대명사화에 있어서의 주어와 목적어의 차이를 수행계약으로써 설명하였다. 즉, (b)문장에서는 선행사-대명사 거리가 멀고 (a)에서는 가깝기 때문에 수행계약 (8)에 따라 (b)에서는 선행사-대명사관계가 성립되나 (a)에서는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수행계약이 타당성을 잃게 되면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어-목적어 차이 또한 대명사이론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게 된다는 것이다.

1.3. Wasow (1972)가 수행계약 (8)을 제안하게 된 근본 동기는 forward pronominalization에는 아무런 문법적인 제약이 가해지지 않는다는 Ross-Langacker가설을 유지하면서 (4~5)와 같은 대명사자료를 설명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이 실패로 끝난 이상 대명사이론은 Ross-Langacker가설을 버리고 (4~5)에서 본 바와 같은 forward pronominalization을 막는 문법적 제약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의 시도를 처음으로 한 사람이 Lakoff (1968)이었다. 그는 (4~5)의 (a)문장을 막기 위하여 대략 아래와 같은 제약규칙을 제안하였다.

- (13) An NP may not serve as the antecedent for a pronoun if
- (a) the NP is to the left of and commands the pronoun,
 - (b) the pronoun is not a relative pronoun,
 - (c) the pronoun is the surface structure subject of its clause, and
 - (d) the NP is prominent with respect to the clause containing the pronoun.

위의 제약규칙 중 새로운 것은 prominence 개념이 조건 (c)와 (d)에 의하여 정의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Lakoff가 정의하는 prominence 개념을 살펴보면 조건 (d)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조건 (d)를 설명하기를 (13a~c)의 구조에서 대명사는 지배되 선행사는 지배하지 않는 S-node가 하나 이하인 경우 그 선행사는 대명사에 비해 prominent하다고 말하고 이러한 조건은 (14)의 (a)와 (b)문장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 (14) (a) **John's house, he* always talks about.
 (b) *John's house, Mary* says that *he* always talks about.

Lakoff의 분석에 따르면 (14a)에서는 *he*를 지배하나 *John*을 지배하지 않는 S-node는 하나 밖에 없지만 (14b)에서는 둘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14a)는 제약규칙 (13)의 제약을 받아 비문이 되고 (14b)는 제약을 받지 않아 정문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Lakoff의 이와 같은 설명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제약규칙 (13)의 조건 (d)는 전치된 구를 갖는 문장의 구절구조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겠는데, 결국 이 조건이 말하려는 것은 전치된 구는 대명사가 주어인 문장의 구성성분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문장의 구성성분 가운데서 주어가 가장 prominent한 성분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당연한 조건으로서 특별히 별개의 조건으로 설정할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Lakoff 제약규칙 (13)은 문장의 주어를 prominence 개념으로서 대명사 제약규칙에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고 precede-and-command나 more-deeply-embedded-than 등이 순수한 구조적 개념인데 반하여 Lakoff의 prominence 개념은 기능적 성격의 것이란 점에서 새로운 시도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Lakoff의 제약규칙은 Ross-Langacker와 Wasow의 규칙과는 달리 (4~5) 및 (9~12)의 대명사자료 중 forward pronominalization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모두 생성되지 않게 막아 준다. 그러나 이 규칙은 Ross-Langacker의 규칙과 마찬가지로 상기한 자료 중 backward pronominalization이 허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결도 해 주지 못하고 있다. 실상 Lakoff의 제약규칙은 그 자체 하나의 대명사규칙으로서 제안된 것이 아니고 Ross-Langacker의 대명사규칙을 적용한 결과 생성되는 비문을 제거하기 위한 output condition으로서 제안된

것이다. 따라서 Lakoff의 제약규칙은 Ross-Langacker가설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대명사이론의 일부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의 제약규칙을 주목하는 것은 주어라는 새로운 prominence개념을 대명사이론에 도입함으로써 그 기술범위를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사실은 주어라는 개념을 (13)에서처럼 output condition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대명사규칙의 중심인 prominence개념으로 사용하게 되면 (4~5)의 forward pronominalization 문제자료 뿐만 아니라 backward pronominalization 문제자료에 대해서도 자연스런 해결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에 의해서도 뒷받침 된다. 즉 주어를 prominent NP로 가정하면 상기 예문의 선행사-대명사연결 중 지칭관계가 허용되는 경우는 모두 prominent NP인 주어가 선행사가 되는 때이고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모두 prominent NP인 주어가 대명사가 되는 때인 것으로 일반화시킬 수가 있어 이들 문제자료들을 prominence의 정도가 높은 명사가 선행사가 되어야 한다는 선행사-대명사관계 성립의 일반적인 원칙에 의하여 설명할 수 있게 된다. Lakoff가 주어를 prominence개념으로 한 일반성있는 대명사규칙을 제안하지 못한 것은 아마도 그가 Ross-Langacker가설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앞으로 이 글에서 제안하게 될 대명사 인지규칙은 주어를 중요한 prominence 개념의 하나로, 사용하게 될 것이며 이 규칙은 지금까지 논의된 문제자료 뿐 아니라 기타의 문제자료에 대해서도 일반성있는 기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2.1. Ross-Langacker가설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새로운 성격의 대명사규칙을 제안한 사람은 Lasnik (1976)이다. 그는 Ross-Langacker식으로 대명사규칙을 선행 및 후행규칙으로 양분하는 것을 옳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한다.

- (15) (a) *Nixon hates people who criticize him.*
 (b) **Nixon hates people who criticize Nixon.*
 (c) **He hates people who criticize Nixon.*
- (16) (a) *People who know Nixon hate him.*
 (b) *People who know Nixon hate Nixon.*
 (c) *People who know him hate Nixon.*

Lasnik (1976)은 위의 예문과 관련하여 주장하기를 "These examples suggest that the relevant distinction is not that of forward as opposed to backward pronominalization, as indicated by Ross, but rather that of cases in which one NP both precedes and commands the other as opposed to all other structural configurations." (p.5)라고 했다. 다시 말하면 (15)와 (16)의 차이는 전자에 있어서는 두개의 동일지칭 명사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precede and command 하는데 반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15)의 경우에는 선행하는 명사가 후행하는 명사를 대명사화하는 것이 의무적일 때 반하여 (16)의 경우에는 대명사화에 있어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b)에서 보는 것처럼 대명사화 여부 자체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명사규칙에 의해 제약되어야 하는 경우는 (15)와 같은 구조에서 일어나는 선행사-대명사관계이며 (16)의 경우에는 전연 규칙에 의해 제약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15)와 같은 경우에 적용되는 제약규칙으로서 아래와 같은 non-co-referential rule을 제안하고 있다.

- (17) If NP₁ precedes and commands NP-2, and NP-2 is not a pronoun, then NP-1 and NP-2 are non-coreferential.

전술한 바와 같이 Lasnik (1976)이전의 대명사이론은 문장내에서 성립되어지는 모든 선행사-대명사관계를 변형규칙이나 기타의 수단으로 연결지움으로써 설명하려 하였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조건하에서 선행사-대명사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가를 규명하려 하였다. 그런데 Lasnik의 non-coreference rule은 그러한 종전의 입장과는 전연 달리 어떠한 조건하에서 두 명사 간에 선행사-대명사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가 하는 것을 밝히려 하고 있다. 즉 문법계약 조건으로서의 대명사규칙은 (15)에 있어서처럼 두 명사 중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precede-and-command할 때 후행하는 명사가 (b-c)문장처럼 대명사가 아니면 동일대상을 지칭할 수 없다는 것만 밝히면 된다는 것이다. 기타의 모든 선행사-대명사관계에 대해서는 그것이 (16a, 17a)처럼 forward이든 backward이든 관계없이 문법규칙에 의해 제약받지 아니하며 문맥의 전후관계나 상황에 따라 동일지칭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됨으로써 종래의 forward와 backward로 나누어진 규칙 대신 어떠한 상황에서는 성립될 수 없는 (16b~c)와 같은 경우와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성립되기도 하고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는 기타의 모든 경우를 나눔으로써 대명사 제약조건으로서의 문장문법의 한계를 설정할 뿐 아니라 문장수준 고유의 제한조건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어 대명사이론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non-coreference rule을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더욱 중요한 것은 상술한 문장수준 고유의 지칭계약규칙이 문장 전체를 rule domain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precede-and-command라는 구체적으로 정의된 domain내에서만 적용되고 domain내에 속하지 않는 명사 간의 지칭관계는 규칙에 의해 전혀 제한받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Rule domain을 변경하면 규칙의 기술적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Lasnik의 그러한 주장은 rule domain을 적절히 설정함으로써 대명사규칙의 기술적 일반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며 실상 그는 논문의 후반부에서 기술자료의 폭을 넓히기 위해 rule domain을 precede-and-command에서 command(=cyclic-node command)로 수정 제안하고 있다.

Rule domain의 문제는 70년대 초까지만해도 특별한 관심을 받지 못했다. Lasnik (1976)이전의 대명사규칙은 문장 전체 혹은 precede-and-command 등을 rule domain으로 삼고는 있었으나 이는 오직 prominence개념을 설정하기 위한 부수적인 것이었을 뿐 규칙의 일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Wasow (1972)는 command를 cyclic-node command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Ross-Langacker 가설을 지키기 위한 한정된 개념이었기 때문에 rule domain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것은 아니다. Lasnik 자신도 rule domain의 문제를 대명사이론의 중심적인 문제로 다루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는 있으나 그의 command라는 rule domain은 많은 문제자료에 대한 설명을 못하고 있다.

아마도 rule domain을 적절하게 설정해서 문제자료를 해결하려는 본격적인 노력은 Reinhart (1976)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분명해진 것처럼 prominence개념의 조작을 통한 대명사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벽에 부딪친 이상 rule domain의 조작을 통한 문제 해결을 시도한 Reinhart (1976)는 우리의 주목을 끌만하다. 앞으로 밝혀지겠지만 Reinhart는 rule domain의 새로운 제안을 통해 많은 문제자료들을 해결하고 있다. 이는 대명사규칙을 설정함에 있어 그 rule domain을 적절하게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상 이 같은 rule domain의 올바른 설정이야말로 대명사이론의 성패를

가능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주장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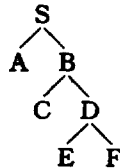
2.2. Reinhart (1976)는 아래 (18)과 같이 정의된 새로운 통사개념인 'c(onstituent)-command'을 제안하고 이 c-command개념에 의해 정해지는 문장 내의 구조단위가 rule domain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19)와 같은 대명사규칙을 제안하고 있다.

(18) Node A c-commands Node B if neither A nor B dominates the other and the first branching node which dominates A dominates B.

(19) The NP's (in a non-strict reflexive environment) can be coreferential just in case if either is in the domain of the other, the one in the domain is a pronoun.

관계개념으로서의 c-command는 command와는 꽤 다르다. 예를 아래 (20)의 구절구조도에서 볼 것 같으면 A-node는 다른 모든 node들을 command하기도 하고 c-command하기도 해서 A-node의 command domain과 c-command domain은 일치한다. 그러나 C-node와 E-node는 A-node를 c-command는 하지 않으나 command는 한다. 따라서 c-command와 command에 의해 정해지는 rule domain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나게 마련이며 c-command domain을 rule domain으로 하는 Reinhart (1976)의 규칙 (19)는 자료기술면에 있어 Ross-Langacker의 규칙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

(20)



Reinhart의 대명사규칙을 자료기술면에서 살펴보기 전에 그 규칙의 특성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Reinhart의 규칙은 Lasnik의 규칙과 마찬가지로 rule domain에 속하지 않는 명사 사이에 성립되는 지칭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일 rule domain에 속하지 않는 두 명사 간의 지칭관계는 문장수준 이상의 계층에서 작용하는 제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상황에 따라 상호지칭관계가 얼마든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 된다. 또 하나의 특색은 종전의 규칙에서 언제나 언급되던 선후관계(precedence relation)가 전연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선행사-대명사관계를 기술함에 있어 선후관계라는 것은 언급될 필요가 없다고 Reinhart가 생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선후 관계라는 것은 선행사-대명사연결을 관계지워 주는 데 있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종래의 입장과는 크게 다른 것인데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규칙 (19)의 자료 기술능력으로 보아 꽤 타당성이 있는 주장인 것 같다.

Reinhart의 규칙은 자료기술능력면에 있어 종전에 제안되었던 어떤 통사규칙보다도 월등하다. 종전의 규칙들이 설명할 수 있었던 것들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문제자료에 대해서도 납득할만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Ross-Langacker규칙에 맨 먼저 문제로 등장했던 아래의 것들은 Reinhart에게는 전연 문제가 되지 않는다.

(21) (a) *Near John, he saw a snake.

(b) Near him, John saw a snake.

(22) (a) *In *Mary's* apartment, *she* was assaulted by a thief.

(b) In *her* apartment, *Mary* was assaulted by a thief.

위의 예문에서 보면 각 문장의 주어는 전치사구 내에 있는 명사의 c-command domain에 속하지 않으나 반대로 그 명사는 주어의 c-command domain내에 속한다. 따라서 규칙 (19)에 따라 전치사구 내의 명사가 대명사인 때에 한해서 두 명사 간의 상호지칭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는데 (21~22)의 선행사-대명사관계는 바로 그러한 규칙 (19)의 예측을 자료면에서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지칭관계를 맺는 주문의 명사가 주어가 아니고 목적어인 경우에는 상호지칭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을 (12b)에서 보았는데 이것 역시 Reinhart의 규칙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 즉 (12b)에서 두 명사는 그 어느 것도 상대방 명사의 c-command domain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규칙 (19)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어 상호지칭관계가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Reinhart는 c-command개념을 사용해서 문제된 자료의 상당수를 대명사규칙의 일반원칙에 맞게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 문제자료에 대한 그녀의 설명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예를 들면 (22a)와 같은 문장에서 (22b)와 같이 전치사구를 길게 하면 *Mary*와 *she*간에 지칭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9b)에서 본 바와 같다.

(22) (a) *In *Mary's* apartment, *she* was assaulted by a thief.

(b) In *Mary's* newly furnished apartment on 5th Ave., *she* was assaulted by a thief.

그런데 Reinhart는 그러한 특이한 지칭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전치사구가 (22b)에서처럼 길어지게 되면 그 전치사구는 구절구조상 뒤따르는 문장의 나머지 부분을 지배하는 S-node 밖에 놓이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되면 *Mary*와 *she*는 서로의 c-command domain에 속하지 않게 되어 상호지칭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Reinhart의 (22b)에 대한 구절구조분석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그녀의 설명에 이의를 제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문제는 그러한 구절분석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Reinhart는 설명하기를 전치사구가 길어지게 되면 짧았을 때에 비해 문장의 나머지 부분과의 관계가 덜 밀접해져서 thematic adverb로서의 분석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 설명은 설명 자체로서는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나 순수한 통사적설명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통사적으로 동일한 두개의 문장에서 (22)의 (b)에서처럼 전치사구가 긴 때와 (a)에서처럼 짧은 때의 통사적구절구조가 다르다는 주장은 잘 납득이 가지 않는 것으로 확실한 통사적근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Reinhart는 그러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의 c-command domain은 순수한 통사적 근거에 의해 설정된다는 Reinhart의 거듭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2b)에 관한 한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Reinhart는 아래와 같은 자료를 설명하기 위하여 Ross (1967)의 Complex NP Constraint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또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3) (a) *In *Zelda's* bed, *she* spent her sweetest hours.

(b) In the bed which *Zelda* stole from the Salvation Army, *she* spent her sweetest hours.

C-command개념에 따르면 위의 (a~b)문장에서 다 같이 *Zelda*는 *she*의 domain에 속한다. 그런데 (a~b)문장 공히 c-command된 명사가 대명사가 아니어서 규칙 (19)에 따라 (a~b)가

다같이 비문이어야 하는데 위에서 보는 것처럼 (a)문장만이 비문이다. Reinhart는 (23b)가 정문이 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Ross의 **Complex NP Constraint**를 도입하여 (23b)에서 *Zelda*가 complex NP 속에 있기 때문에 규칙 (19)가 적용되지 않아서 *Zelda*와 *she*가 상호지칭관계에 있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러한 설명이 타당성을 지니려면 (23b)에서 전치사구가 전치되기 이전의 구조인 (24)와 같은 경우에는 왜 **Complex NP Constraint**가 적용되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24) **She spent her sweetest hours in the bed Zelda stole from the Salvation Army.*

위 문장에서 *she*와 *Zelda*의 domain관계는 (23b)에서와 같으며 *Zelda*가 complex NP 속에 있다는 점에서도 (23b)와 동일하다. 그러면 (23b)에서처럼 **Complex NP Constraint** 때문에 규칙 (19)가 적용되지 않아 *she*와 *Zelda* 간에는 상호지칭관계가 허용되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하다. 이는 **Complex NP Constraint**가 (23b)의 경우에는 적용되나 (24)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규칙 혹은 제약의 선별적 적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정적모형(static model)인 통사론에서는 규칙 혹은 제약의 적용을 위한 구조적 요건만 충족되면 적용이 되어야 하며 납득할만한 이유없이 앞서 본 바와 같은 규칙의 선별적 적용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Reinhart자신 그러한 규칙의 선별적 적용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p.163).

3.1. C-command domain을 대명사규칙이 적용되는 구조적단위로 삼는 Reinhart의 대명사 이론에는 그 외에도 몇가지의 문제점이 있으나 특히 (22b)와 (23b)와 관련하여 위에서 지적한 두 가지의 문제점은 통사론적 접근법을 취하는 모든 대명사이론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란 점에서 특별한 것들이다. 그 두 문제점의 성격을 살펴보면, (22b)나 (23b)와 같은 문장에서는 대명사규칙의 일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문장의 어느 한 부분에 대명사 규칙이 적용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이를 위한 타당한 통사적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설명** Reinhart의 제안이 통사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갖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동일한 개념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rule domain의 설정이 (22b)의 경우에는 구질구조의 형태 분석을 통해 이루어지고 (23b)의 경우에는 제약조건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rule domain설정을 위한 좀 더 일반성있는 원칙을 찾아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본다. 실상 우리는 rule domain의 설정에 있어 (22b) 및 (23b)가 제기하는 문제는 정적모형인 통사론에서는 해결될 수 없는 성격의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 문제의 해결은 오직 동적 개념의 구사가 가능한 인지모형을 도입해야만 비로소 일반성있는 원칙의 적용을 통한 rule domain의 설정이 가능하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우리는 이미 다른 곳(Kong 1981)에서 인간이 문장을 이해판독할 때 기본단위로 삼는 인지적 명제단위가 대명사규칙의 rule domain으로 사용되어야 대명사 지칭관계의 동적 측면을 포착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리가 문장인지의 기본단위로 제안한 인지적 명제단위는 종래의 의미론 혹은 논리학에서 말하는 명제(proposition)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우리의 명제단위는 그러한 것들 뿐 아니라 통사적으로는 명제단위로서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였드래도 parser가 그것을 명제단위로 인지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인지적 명제단위로 취급되어진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한가지의 제한요건은 어떤 한 구조단위를 인지적 명제단위를 분절하기 위해서는 문장의 나머지 부분 역시 독립된 인지적 명제단위로 취급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25a)에서 주어 자리에 있는 *that*-절은 그 자체로서는

- (25) (a) **That he is sick bothered George.**
 (b) **In his hometown, Ford is considered a genius.**

독립된 명제단위가 될 수 있으나 문장의 나머지 부분이 독립된 명제단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문장전체가 하나의 인지적 명제단위가 된다. 그에 반해서 (25b)에서는 문두의 전치사구 *In his hometown*이 구조상의 형태로는 명제적 단위가 아니다. 문장의 의미상 *thematic adverb*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인지적 명제단위로 취급한다.

*Thematic adverb*를 하나의 독립된 인지단위로 취급하는 문제는 우리가 명제라는 개념에 대한 고정관념만 버리면 쉬 납득이 가는 일이다. 우리는 보통 *speaking of*~ 혹은 *as for*~ 등을 *thematic adverb*에 부차으로써 의미내용상 문장에 가까운 취급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thematic adverb*는 뒤따르는 문장이 전달하는 서술내용의 상황을 설정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것이 의미내용상 뒤따르는 문장 부분과 대등한 관계에 있는 것이지 결코 문장전체가 나타내는 명제의 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cf. Kuno 1975). 이는 형태상 동일하나, *thematic adverb*의 기능을 갖지 못하는 아래와 같은 예와 비교해 보면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다.

- (26) **In his hometown, Hoffa was killed by the gangsters.**

윗 문장에서는 문두의 전치사구가 순수한 부사적 기능만 갖고 있어 상황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이해하기는 불가능하다. 만약 억지로 전치사구를 상황부사로 이해하려면 문장의 나머지 부분의 뜻이 앞 부분과 맞지않게 되어 문장 전체가 비문으로 처리될 것이다. 따라서 (26)과 같은 문장은 문장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해서 이해할 수 밖에 없다. 이미 본바와 같이 (25b)에서는 그와 같은 문제가 전혀 없이 전치구에 뒤따르는 문장 부분을 독립된 단위로 이해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25b)에 대한 가장 자연스런 의미해석이다. 이는 *parser*가 문장처리를 함에 있어 (25b)를 두개의 처리단위로 취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가 인간을 하나의 효율적인 정보처리장치로 가정을 할 때 *human parser*는 (25b)의 상황부사구를 본문과는 별개의 독립된 인지단위를 처리할 것이라고 가정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인간 정보처리 장치의 제일단계로 가정되고 있는 인지단계 (*perceptual stage*)는 그 기억능력 및 처리 용량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데도 계속 들어오는 입력정보인 문장의 의미를 매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해내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우리는 인간 정보처리장치가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해 어떤 전략(*strategy*)들을 갖고 있으리라는 가정을 할 수 있는데 앞서 본 인지단위의 분절 등이 그러한 전략의 한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전략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에 직접 관련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지단위로 분절된 단위는 그 단위에 대한 정보처리가 끝나면 곧 다음 정보처리단계로 이송되어져서 인지단계의 기억능력 및 처리용량에 대한 부하를 최소로 억제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들을 염두에 두고 앞서 이야기한 (25b)를 두개의 인지단위로 분절하는 문제를 생각하면 그 해답은 자명한 것이다. 왜냐하면 문장 전체의 의미해석에 아무런 지장을 줌이 없이 하나의 문장을 두개의 인지단위로 분절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위에서 말한 두개의 인지전략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바와 같은 원칙에 의해 분절된 인지단위는 대명사규칙이 적용되는 *rule*

domain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는 인지처리단계에서는 하나 이상의 인지단위가 동시에 정보처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인지처리장치의 기능적 특징에서 오는 결과로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논의없이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도 좋으리라 믿는다. 이상에서 우리는 rule domain을 인지적으로 정의했으니 이제 인지적으로 정의된 prominence개념과 대명사규칙만 설정되면 이것들이 대명사자료에 대해 어떠한 설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 볼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잘 나타난 바와 같이 통사이론의 근본적인 문제가 rule domain의 설정에 있었는데 이미 rule domain이 인지적으로 재정의되었으니 여기서는 먼저 아래 (26)와 같은 대명사규칙을 설정하고 그기에 사용될 prominence개념은 이 글에서 다루어지는 자료를 설명하는데 필요한 것만 제시하겠다.

(26) The parser never assigns a coreferential interpretation to two NP's in case the NP in non-prominent position is not a pronoun.

위에 설정한 대명사규칙은 동일 rule domain에 속하는 명사간에 선행사-대명사관계가 성립될 때는 언제나 상대적으로 prominent한 명사가 선행사가 되고 non-prominent한 명사가 대명사가 된다는 잘 알려진 사실을 규칙의 형태로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규칙 (26)의 성패는 우리가 이미 인지적 기준에 의해 이미 설정한 rule domain과 domain내의 명사 간의 상대적 prominence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있다.

Rule domain 내의 명사의 상대적 prominence는 취급하는 대명사자료의 유형이 많아지면 꽤 복잡한 형태로 발전시켜야 하나 이 글에서 취급하는 자료의 설명을 위해서는 문장의 주어와 기타의 문장구성성분에 비해 인지적으로 prominent하다고 가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주어와 기타의 문장구성성분들은 배열순서(temporal order)에 관계없이 동등한 prominence를 지닌다. 그리고 문장구성성분간의 배열순서의 선후관계는 상대적 prominence를 결정짓는 요인이 아니고 다만 선행하는 명사를 뒤따르는 대명사의 지칭대상으로 삼으려 하는 parser의 성향이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배열의 순서에 있어 대명사가 선행사에 앞서 있을 때는 선후관계가 아무런 작용을 할 수가 없으며 또한 선행사가 대명사를 앞서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뒤따르는 대명사가 상대적으로 앞서 있는 명사보다 prominent한 때에는 parser의 선행사 선행선호(先行選好)는 아무런 작용을 못하게 되어 대명사-선행사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3.2. 우리가 위에서 다룬 인지적 rule domain과 prominence개념에 대한 논의는 매우 불충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글의 성격상 그 개념들에 대한 설정 근거를 좀 더 자세하게 다룰 형편이 못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개념들을 대명사규칙 (26)에 도입하여 지금까지 문제되어 온 자료를 포함한 기타의 대명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일반성있게 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우리가 가정한대로의 rule domain과 prominence개념이 타당함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더 나아가 대명사 문제는 동적인 인지적 개념을 사용해야 해결될 수 있다는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하려 한다.

먼저 가장 문제되었던 자료 중의 하나였던 (23b)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3b) In the bed which *Zelda* stole from the Salvation Army, *she* spent her sweetest hours.

이 문칭에서 가장 prominent한 명사는 주어이다. 그래서 문장전체가 하나의 rule domain 즉 인지단위라면 *Zelda*와 *she*의 상호지칭관계는 성립되지 못한다. 그러나 인지적 명제단위는 독립된 인지단위로 분절된다는 원칙에 따라 전치된 전치사구에 내포된 관계절은 독립된 인지단위로 분절되어 문장의 나머지 부분과는 별개의 인지단위 즉 rule domain을 구성하게 된다. 그러면 *Zelda*와 *she*는 각각 별개의 rule domain에 속하게 됨으로 규칙 (26)의 제한을 받음이 없이 상호지칭관계가 성립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23b)에서 관계절이 그 자체가 내포되어 있는 전치사구 proper와 별개의 rule domain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rule domain의 구성은 정적모형인 통사론에서는 할 수 없는 동적인 성격의 것이나 인지단위를 rule domain으로 삼는 인지모형에서는 이에 대해 극히 자연스런 설명을 할 수 있다. 즉, parser가 관계절을 포함한 전치사구를 끝까지 처리했을 때 그 관계절은 의미내용상 완전한 명제단위가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문장의 나머지 부분의 처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단위가 아니다. 그렇다면 인지처리단계의 부하를 최소로 줄여야 할 parser로서는 관계절 부분을 다음 단계로 송출하여 부하를 줄이게 될 것이라고 가정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명제단위로 완성된 관계절을 계속 지니고 있음으로 해서 제한된 기억능력에 불필요한 부하를 가하게 된다면 그러한 parser는 매우 비효율적인 정보처리장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parser는 그러한 비효율적인 정보처리장치가 아니다.

일단 관계절이 다음 처리단계로 송출되어 버린 후 문장의 나머지부분이 처리될 때는 이미 관계절은 다음 처리단계로 송출된 뒤여서 parser의 인지처리단계에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인지적 명제단위를 인지단위로 삼는 인지모형에서는 관계절과 문장의 나머지 부분에 규칙 (26)이 동시에 적용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23b)에서 관계절과 문장의 나머지 부분이 별개의 rule domain을 형성한다는 가설을 인간와 문장인지행위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구조적 제약에 바탕하여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게 된다.

문제자료의 하나였던 (22b)의 경우도 우리의 인지모형에서는 문제자료가 되지 못한다.

(22b) In *Mary's* newly-furnished apartment on 5th Ave., *she* was assaulted by a thief.

윗 문장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전치사구와 문장의 나머지 부분을 별개의 rule domain으로 취급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앞서 우리는 윗 문장과 관련하여 전치전 전치사구 길어지게 되면 thematic adverb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Reinhart의 설명을 소개한 바 있는데, 우리는 그곳에서 그러한 설명이 전치사구와 문장의 나머지부분을 별개의 rule domain으로 취급할 통사적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thematic adverb를 인지적 명제단위로 취급하는 우리의 인지모형에서는 thematic adverb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22b)의 전치사구가 문장의 나머지부분과 독립된 별개의 rule domain으로 분절되어질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기억장치에 부담을 덜 주면서 문장이 지닌 의미를 회수하는 인지모형의 성격에 알맞는 분절방법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22b)의 *John*과 *he*가 각각 별개의 rule domain에 속하기 때문에 상호지칭관계가 성립된다고 매우 자연스럽게 설명해 줄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전치사구가 길어져 의미내용이 풍부해짐으로써 독립된 인지단위로 분절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문장처리의 효율을 높이는 분절방법이 되기 때문에 parser는 그 전치사구를 독립된 하나의 인지단위로 분절한다고 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parser가 문장의 어떤 부분을 독립된 인지단위로 분절할 수 있으면 언제나 그렇게 한다는 것은 Kuno (1975)가 제시한 아래 (27)의 문장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 (27) (a) *In John's apartment, he was studying desperately for the final examination.
 (b) While all this was going on in Mary's apartment that evening, in John's apartment, he was studying desperately for the final examination.

위의 (a), (b)문장에서 보면 통사적으로 동일한 문장성분간의 상호지칭관계가 (a)에서는 성립되지 않으나 (b)에서는 성립되고 있다. 이 또한 통사적인 설명은 있기 어려우나 인지적인 설명은 용이하게 얻을 수 있다. (a)문장에 대한 가장 자연스런 의미해석은 전치사구를 부사로 해석하는 것이어서 문장전체를 하나의 인지단위로 취급해야 한다. 그것을 억지로 thematic adverb로 해석하면 문장 전체의 뜻이 이상해지기 때문에 parser는 문장 전체의 뜻을 왜곡시키면서까지 전치구를 thematic adverb로 해석하지 않으리라고 가정할 수 있고 (a)문장의 대명사 지칭관계도 그러한 가정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b)문장 전치사구는 구문상으로 (a)문장에서와 꼭 같은 위치에 있지만 앞서있는 while절이 기술하는 상황과 대립되는 상황장면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 상황부사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문장 전체에 대한 가장 자연스런 의미해석을 할 수 있는 길이다. 따라서 parser는 이를 *he* 이하의 문장부분과는 독립된 인지단위로 분절 처리할 것이라 가정해야 하고 (b)문장의 대명사지칭관계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우리는 위에서 종래의 대명사이론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자료들을 인지적명제단위라는 분절 원칙과 최소부담의 인지처리라는 매우 자연스럽고 일반성있는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음을 보였다. 종래의 문계자료로서 Reinhart의 규칙이 해결해 낸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아래의 자료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위에서 적용한 것과 꼭 같은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설명할 수 있다.

- (28) (a) *In Mary's apartment, she was assaulted by a thief.
 (b) In her apartment, Mary was assaulted by a thief.
 (c) In Mary's apartment, a thief assaulted her.

(28a~b)는 각각 하나의 인지단위로 된 문장들이며 (a)에서는 prominent한 명사인 주어와 대명사이고 덜 prominent한 Mary가 선행사이기 때문에 규칙 (26)에 의해 상호지칭관계가 성립될 수 없고 (b)에서는 그 관계가 반대가 되기 때문에 지칭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이 우리의 설명이다. 위의 (a~b)문장에 대한 우리의 설명은 문장 전체를 하나의 rule domain으로 본다는 점에서 Reinhart의 설명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c)문장에서는 두 설명간의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Reinhart는 (c)문장에서 Mary와 her간에 상호지칭 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그 NP가 각각 다른 c-command domain(rule domain)에 속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우리는 (c)문장은 (a~b)와 같이 하나의 인지단위(rule domain)를 구성하며 두 명사간에 상호지칭관계가 자연스럽게 성립되는 것은 Mary가 her보다 앞서 있어서 뒤따르는 대명사의 지칭대상을 앞서있는 명사에서 찾으려는 parser의 성향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Reinhart의 설명에서 좀 불만인 것은 왜 동일한 문장에 적용되는 규칙의 rule domain이 대상명사가 바뀔 때마다 하나가 되었다가 (a~b의 경우) 들어되었다(c의 경우) 하느냐는 것이다. 그의 설명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로 문장 (c)에서 선행사-대명사관계가 뒤바뀐 (29)의 문장을 들 수 있다.

- (29) ?In her apartment, a thief assaulted Mary.

위 문장에서의 상호지칭관계는 Lakoff (1988)가 지적한대로 많은 native speaker들이 부자연

스런 것으로 느끼고 있다. 그런데 Reinhart의 c-command domain은 (29)과 (28c)를 꼭 같이 두개의 rule domain으로 구성된 문장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선행사-대명사의 선후순서에 관계 없이 *Mary*와 *her*간에는 지칭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설명함으로써 실제 자료와는 어긋나는 예측을 하게 된다. 우리의 인지모형에서는 (29)에 대해서는 대명사가 선행하기 때문에 앞서 있는 명사를 후행하는 대명사의 지칭대상으로 삼으려는 parser의 성향이 작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두 명사간의 인지적 prominence가 동등하기 때문에 특별히 상황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지 않는 중립적 상황에서는 (29)의 두 명사를 상호지칭관계로 연결지으려는 해석은 부자연스런 느낌을 줄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여기서도 우리는 인지적으로 자연스런 개념만의 적용을 통해 문제자료의 하나인 (29)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아래 (30)의 선행사-대명사연결 역시 종래의 대명사이론들에게 문제되었던 자료의 하나이다.

- (30) (a) In *Ford's* hometown, *he* is considered a genius.
 (b) *In *Hoffa's* hometown, *he* was killed by the gangsters.

그러나 thematic adverb를 하나의 독립된 명제단위로 분절하는 우리의 인지모형에서는 위의 두 문장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대명사-선행사연결의 차이를 인지단위 분절의 차이에서 오는 자동적인 결과로 설명을 한다. 즉 (a)문장은 전치사구가 상황부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개의 rule domain을 형성하나 (b)문장은 전치사구가 순수한 부사이기 때문에 문장전체가 하나의 rule domain을 형성한다. 따라서 (a)에서는 *Ford*와 *he*는 각각 다른 rule domain에 속하기 때문에 상호지칭관계가 성립되고, (b)에서는 *Hoffa*와 *he*가 동일 rule domain에 속하면서 인지적으로 덜 prominent한 *Hoffa*가 대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칭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인지개념을 대명사이론에 도입하면 다른 자의적(恣意的)인 제약조건들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22b)와 (23b)뿐 아니라 기타의 문제자료에 대해서도 일반성있는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지금까지 우리는 통사적 입장을 지킨 대명사이론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자료들이 동적인 인지적 개념을 대명사이론에 도입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음을 보이려 하였다. 이 글에서는 소위 말하는 기능적 접근법을 취하는 대명사이론들은 논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들 기능적 입장을 취하는 이론들이 기본적으로 정적모형이라는 점에서 통사모형과 다를 바 없고 대명사문제는 통사론에서 가장 철저하게 다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룬 자료는 극히 제한된 것이었으나 통사이론에서 가장 문제가 되어온 자료들이 바로 가장 전형적인 동적개념의 구사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었다는 점에서 선행사-대명사 지칭관계는 정적모형이 포착할 수 없는 동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우리의 주장이 뒷받침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Bibliography

- Akmajian, A. and R. Jackendoff (1970), "Coreferentiality and Stress," *Linguistic Inquiry* 1, 124-126.
 Kong, Y.I. (1981), *Perceptual Nature of Pronoun Comprehension in English*,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Kyung Hee University.
 Kuno S. (1975), "Three Perspectives in Functional Approach to Syntax," *Papers from the Parasession*

on *Functionalism*, Chicago Linguistic Society.

Lakoff G. (1968), "Pronouns and Reference," mimeo, also in J. McCawley (1976), ed., *Syntax and Semantics*, 7, Academic Press.

Langacker, R. (1966), "On Pronominalization and the Chain of Command," in D. Reibel and S. Schane, eds., *Modern Studies in English*, Prentice Hall.

Lasnik, H. (1976), "Remarks on Coreference," *Linguistic Analysis* 2, 1-22.

Reinhart, T. (1976), *The Syntactic Domain of Anaphora*,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MIT.

Wasow T. (1972), *Anaphoric Relations in English*,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MIT.

경희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학과 교수